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434호

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)로 정비구역 지정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32호 (2007.5.17.)로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호(2018.1.11.)로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5호 (2018.5.24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 지정된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.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,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 (중구청 도심재생과, ☎02-3396-5775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.

2018년 6월 1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가. 사업의 명칭 :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- 나. 시행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-1번지 일대
- 다. 시행면적 : 1,603.0㎡ (대지 1,399.4㎡, 정비기반시설 203.6㎡)
- 라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성 명 : (주)교원구문 / 대표 장 평순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
- 마.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0개월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:별첨
- 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- 건축면적 : 928.02㎡ · 연면적 : 18,538.59㎡
 - 건폐율 : 66.32% · 용적률 : 926.01%
 - 층수/높이 : 지상17층, 지하6층 / 69.9M
 - 주 용 도 :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
- 아.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사항 : 별첨
- 자. 공람내용 :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내용
- 차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- 카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5)
- 타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(생략). 끝.